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93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배준영 · 최수진 · 이상희
권영진 · 김종양 · 김위상
한지아 · 서명옥 · 송석준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 · 정보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 기관 ·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

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검증기관·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

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통계·수요창출·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과 국제 탄소규제·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감축실적”이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인증을 받아 등록기관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량(「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실적과 동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감축사업”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연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단법인, 단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발행”이란 감축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로 달성한 탄소감축량 실적을 검증, 인증 및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생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사업계획서”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의 목표, 수행범위, 감축방법론, 추진일정 등의 전반적인 탄소감축 계획사업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6. “감축방법론”이란 자발적 감축실적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검증”이란 감축사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감축사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감축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의 산정이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등록기관”이란 감축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유통, 소각의 전 과정을 관리, 공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을 의미한다.
10. “평가기관”이란 감축사업의 환경적 무결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투명성, 부정적 영향 등을 독립적, 객관적 지위에서 심사, 검토하

고, 그 결과에 대한 등급화, 점수화 등의 방법으로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소각”이란 구매한 자발적 감축 실적을 영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을 자발적 탄소시장 내에서 더 이상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요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유통, 소각은 투명성, 신뢰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검증기관, 등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각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요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구매에 앞서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2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및 검증

제4조(등록기관의 신고) ① 등록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①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감축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 감축방법론 등록 및 등록부 운영·관리
2. 감축사업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심의 및 승인
3. 제7조의 검증기관의 검증 업무 수행 결과 검토
4. 자발적 감축실적 발행
5. 그 밖에 자발적 감축실적을 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등록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타 등록기관에게 등록부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검증) ①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축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감축사업에 따른 탄소감축량을 측정하고 작성한 감축사업 결과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공하여 감축실적 산정에 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자발적 감축실적 산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증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및 등록) ① 감축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이후, 감축사업 결과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

출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적합성을 평가하여 탄소감축량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된 탄소감축량에 고유 일련번호를 할당하고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및 등록의 취소) ① 등록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등록한 자발적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발적 감축실적을 인증받은 경우

2. 온실가스 감축량이 중복으로 인증받거나 등록된 경우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취소 당시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그 취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인증 및 등록이 취소된 자

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 및 등록의 취소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설정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자발적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원칙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절차 상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설정한 평가지표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제10조(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①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한 등록기관이 발행한 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고, 거래된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등록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의 이전은 제3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내용이 등록부에 반영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발적 감축실적의 상장에 관한 사항
2.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3.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감축사업자, 검증기관, 등록기관 및 평가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채무보증, 담보 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①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자발적 감축실적에 관한 일련의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
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
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거래한 자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제13조(장외거래) ① 자발적 감축실적은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자
발적 감축실적 거래시장(이하 ‘장외거래’라 한다.)에서 거래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을 취득한 자
가 이 법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외시장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
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 방법 및 결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 제14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① 수요자는 구매한 자발적 감축실적을 소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각된 감축실적의 수량, 소각 날짜, 소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각 사실을 통보 받은 등록기관은 그 내용을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소각 당시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그 소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소각 대상이 되는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촉진) ① 조달청장은 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

제16조(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 지원) ①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3.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4.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조사
5.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등에 필요한 지원
6.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7.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이 수행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 제18조(감독·검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및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및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거래소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등록기관,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조치)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자발적 감축실적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자발적 감축실적의 인증 및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하여 해당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거래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등록기관 및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거래에 대한 조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등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등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9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신고 말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예산처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2조(과징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24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감축사업자, 검증기관, 등록기관 및 평가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 지정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